

제43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9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2.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4)
3.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4.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0)
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5)
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8.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9.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1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2)
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3)
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1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1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상정된 안건

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2
2.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4) ... 2
3.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2
4.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0)	2
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5)	2
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2
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3
8.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3
9.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2
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12
1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20
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2)	20
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3)	20
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22
1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22
1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22

(10시09분 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2.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4)
3.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4)
4.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0)
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5)
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4)

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5)

8.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1)

○소위원장 조경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8건의 제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거점항만 지정 또는 연관산업 육성 전략 수립, 북극항로 위원회 설치, 북극항로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문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제협력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이에 따른 항로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국제 해상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활용은 물류비 절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그리고 국내 조선산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해빙 패턴의 연도별·계절별 불규칙성,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환경 리스크 등 환경적 제약 등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및 대러 제재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는 극지활동 진흥법과 유사·중복 규정이 많으므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러시아 이익 발생에 따른 미국의 제재와 관련된 우려 해소 선행 후 입법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극지활동 진흥법과 제정법안들의 비교는 5페이지 및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별도로 준비한 조문대비표 자료에 있는 수정의견안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이 8건이기 때문에 큰 B4 용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 제명과 관련해서 8건의 제정안은 정책의 주요 대상 및 추진 목적에 따라 제명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내용 확정 후 그에 맞게 제명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에 관련해서 8건의 제정안은 대체로 북극항로의 개척·구축·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거점항만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국가경

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 미래 성장동력 창출, 해상물류의 주도권 확보,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은 정책의 기준과 방향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고 북극항로 이용은 향후 국제적 합의와 대러 제재 및 북극 해빙 변화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미래에 진행될 사안이므로 현재는 이를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들은 정의와 관련하여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또는 북극해를 포함하여 운항하는 항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 등은 북극항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북극해에 대해서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들은 거점항만 또는 연관산업 그리고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북극항로는 공간적으로 북극해 전체를 포괄하는 큰 범주의 개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극항로를 북극해를 포함하여 운항하는 항로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북극해에 대한 정의 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정안은 크게 거점항만 또는 연관산업 중심으로 북극항로 이용을 추진하는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업무, 시책 수립, 재정·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정의하고, 관련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연관산업의 종류를 각목에 상세히 열거하며,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북극항로사업자’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기상청은 연관산업에 대해 각목에 해당하는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각목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북극항로와 관련 있는 세부적인 사업 범위를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관련해서 문대림 의원안 등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8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북극항로 구축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기구 의원안 등은 시책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주철현 의원안은 거점항만 육성·지원 의무, 조정태 의원안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비상대응체계 및 지원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목적과 정의 조항 및 제정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인 우리나라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외교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약 준수 의무를 포함하고 비상대응체계, 지원 인프라 확보는 일반적으로 책무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해수부는 북극해역의 인프라 취약성을 감안하여 해사안전 리스크를 국가 책무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극지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8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희용·김정재 의원안은 기본계획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김정재 의원안은 북극항로 개척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은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른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의원안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그리고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8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황·전망,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기본계획은 내용의 구체화를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기본계획에는 효과성 확대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제정안은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의 심의 절차 그리고 자료요청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더불어 정희용·김정재 의원안의 내용 중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극항로 운항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8페이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대림 의원안 등은 기본계획에 대해 그리고 여기고 의원안 등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 대상은 각 법안의 중점 사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정안들은 자료 및 협조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자료·협조 요청의 대상은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북극항로 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 거부 요건을 특별한 사유

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거점항만의 지정·육성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정희용 의원안 등은 거점항만 또는 거점 지역의 지정·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그리고 여기구 의원안 등은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 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전략 시행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거점항만 지정·육성 또는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 전략 규정 여부는 제정안의 정의와 내용의 체계성 및 북극항로의 효과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정안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을 상세히 들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북극항로위원회와 관련해서 8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북극항로에 관하여 관계부처 간 의견을 통합 조정하며 주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소속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제정안의 당연직 위원은 아래 표와 같고 그 밖의 위원으로 문대림 의원안 등은 대통령비서실에 과학기술·해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여기구 의원안 등은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되 대체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계입니다. 위원회의 소속 여부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성격 그리고 행정절차의 신속성과 정책 조정의 효율성, 위상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제정안 내용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구 의원안 등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지역별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임미애 의원안과 같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자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규정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미애·조경태 의원안과 같이 동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경우에 시행령 위임 사항을 최소화하여 시행령 없이도 위원회가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의 관계부처 의견으로 통일부와 기상청은 업무 및 위원회에 해당 부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실무위원회와 관련하여 어기구 의원안 등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에서 북극항로추진본부 쪽을 보시면 북극항로추진본부는 현재 총리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정안들은 북극항로사업자 등에게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재정경제부는 제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특례 규정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동 제정안의 규정이 타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문자료 수정의견에서는 세제 지원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및 61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는 연구개발에 관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고.

61페이지를 보시면 제정안은 북극항로 관련 연구개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목적과 정의 조항 및 제정안의 내용에 따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 추진 및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광범위한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추진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6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정의 조항 및 제정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 지원의 주체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들은 북극항로 관련 센터 또는 대학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안 등은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 동향 및 관련 데이터 구축·제공 등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에 대해 그리고 어기구 의원안 등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재 의원안은 센터가 북극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북극해운정보센터는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과의 관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의견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

임미애 의원안 중 센터의 업무에 포함된 국제협력은 외교적 판단을 수반하는데 제정안에서 국제협력의 주체를 정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 센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류 데이터는 상업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센터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북극대학원대학의 설립은 교육부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방식 대신 기존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여 극지 및 북극항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래의 관계부처 의견은 교육부 의견인데 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가 정부기관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관의 성격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희용 의원안과 김정재 의원안은 친환경 운항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 선박 개발 등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과 제정안에서 친환경적인 북극항로 운항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문대림 의원안 등은 주체를 정부로 그리고 여기구 의원안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조승환 의원안은 외교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사업 추진 주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광범위한 성격을 고려할 때 정부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주철현 의원안 등은 항만시설, 물류거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정희용 의원안 등은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을 연관산업 육성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 지원은 기본계획에 기반 조성 또는 도시개발·교통망 확충과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상품 개발은 재정 및 금융 지원 규정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내용입니다.

문대림 의원안 등은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승환 의원안은 북극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일정 사업에 대해 면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현행법상 대규모 특정 국가사업에 도입되어 있고 이외에는 우선 추진 또는 신속 추진 규정을 두거나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관계부처 의견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는 제정안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유사 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문 자료의 수정의견안에는 동 조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문대림 의원안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리고 정희용 의원안 등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문대림 의원안 등은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여기구 의원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문대림 의원안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정희용 의원안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임미애 의원안 등은 제8조(북극항로위원회)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여기구 의원안은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임미애 의원안 등은 8조의 시행일부터 이 법 전부 시행일 전까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대통령령 등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되 북극항로·연관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북극항로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 관련 8조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제8조 시행일 이전에는 위원을 위촉할 위원장이 부재한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운영되기 어려우므로 즉시 시행을

위해서는 위원회 근거 규정의 시행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차관입니다.

우선 많은 의원님들께서 북극항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조경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구 상임위원장님, 그 외에 문대림 의원님 등의 법안이 8개나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전문위원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의견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차관님, 작년입니까? 국정감사 때 이 북극항로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올 3월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용역을 해서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3월이 지났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국회에 보고가 가능한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게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선거철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 법안은 지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정족수가 좀 부족하긴 한데 자리에 없으신 위원님들 연락하셔서 빨리 참석 좀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나면 6개월 후부터 발효가 되는 부분들인데, 기본계획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국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제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해수부에서 준비하는 상황으로는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일단 저희들 북극항로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간 법시행은, 정식 법적 절차에 따른 기본계획은 시행 후에 확정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초안이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송옥주 위원** 절차상으로는 알겠는데 대략적으로 예측한 게 연내든 가을이든 국정감사 시즌이든 어느 때쯤으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하여간 최대한 서둘러서 저희들이 준비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법 시행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즉시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북극항로 관련된 예산이 올해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올해 기존 예산에 또 신규 예산까지 포함해서 일부 반영돼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는 대폭 증액된 예산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작업하고 또 기획예산처하고도……

○**송옥주 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여기에 기구라든지 기관이나 관계되는 부수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한 예산을 담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충실한 예산을 반영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역점사업인 만큼 잘 준비하시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재명 정부하에서 중점사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조경태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는데 일단 위원회 구성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는 걸로, 시행되는 걸로 했고 또 공포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법이 시행되는 걸로 부칙에 정리됐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면, 의사결정이 되면 최소한 한 10월이나 11월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이 부분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만큼 그런 내용들을 잘 추려서 기본계획에 담고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 일정은 국정감사나 이런 정기국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조승환 위원님께서 북극항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에서 저는 북극항로가 아니라 북극해에 대한 전체를 가지고 해야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우리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해수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수부 검토의견에서 그냥 북극해는 빼는 걸로 해서 와 버려 어제 제가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 안 하겠다고 의사 결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정개특위에 가 있

다가 급히 올라왔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런데 차관님, 조승환 위원님께서 점잖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북극해에 대한 내용도 담아내는 것은 좀 무리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북극해가 용어의 정의에도 있고요. 당연히 북극항로를 이용을 하려면 수역이 되는 북극해와 관련돼서도 그 연관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제 사업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거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위원회 소속에 대해서, 대통령 소속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승환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저는 위원회 사무처가 상근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사실 고민을 가지고서,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사무처가 기능이 거의 없게 되는 경향이 있고 대통령으로 들어가면 사무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지금 북극본부가 생겼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큰 차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의지도 많이 떨어지신 것 같고.

○소위원장 조경태 조승환 위원님께서 아주 크게 이해를 해 주셔서,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차관님, 사실 타당성조사를 안 받고 이거 해 주는 것만큼 무겁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사실은 먼저 그걸 받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야당이지만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법안을 올리는 거니까, 통과시키는 거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통과해 주서 가지고.

9.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10시40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과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은 지난 3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주요 내용, 공청회, 입법 필요성 등과 조문별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별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는 두 번째 것 뒤에 있습니다. 참고로 별지 자료는 소위 자료 중 심사경과와 조문 자료만 따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별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심사 경과와 관련하여 아래 표를 보시면 지난 3월 19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농촌과 어촌 간 차별이 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어민들의 어업활동 규제와 관련된 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제정안 관련 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벌칙 관련, ‘고장이나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않은 자’와 같이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를 다른 벌칙 조항과 같은 양형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돼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제정안 입법에 따른 수산업법상의 각종 규제 개선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수정의견안을 중심으로 개별 조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비교란에 조문별 검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안 제명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와 관련해서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두 제정안의 취지를 모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연근해어업, 어업활동,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 어선, 수산물 등에 대한 지원 규정입니다.

정부안과 윤준병 의원안과 수정의견안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7페이지의 어선과 관련해서 제6호에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므로 어선에 대한 정의를 ‘어선법 제2조제1호가목의 어선’으로 수정하고 나목은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11호와 12호 관련해서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제정안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용 중 제정안은 연근해어업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업 관련 탐색·집어,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등에 관한 행위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윤준병 의원안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되 보시면 4항

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공고 규정을 추가하고 제5항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도시행계획과의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5항 각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시·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련해서도 윤준병 의원안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되 제2항제2호에 관련해서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시·도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시·도 세부 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4항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고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조는 생략하고, 제8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와 관련하여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의 ‘조업’을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활동’으로 수정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준을 어선법의 규정 체계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미작동의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고장이나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않은 자’와 같이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벌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를 다른 벌칙 조항과 같은 양형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9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보고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매 조업일 어획보고와 관련해서 조업일마다 어획보고를 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고 조업별 특성을 고려한 예외 마련 필요 관련해 이동하면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해구별로 어획량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양륙장소의 지정)와 관련해서 안 제10조는 양륙장소 지정을 임의적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1조(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정 양륙항이 없는 낙도·벽지의 어선이나 기상악화·어선안전상의 이유’ 등을 예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12조(양륙검색 등)는 어획보고 등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12조제3항의 사항도 양륙검색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명령’으로 수정하고 제4항과 같이

처벌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6항과 관련해서 안 제12조제4항은 양륙검색의 결과 법령 위반 사항 발생 시 어획물의 양륙 금지 및 해당 어선의 일시적 출항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조항 위반 시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권한 행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절차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3조(양륙실적의 보고)와 관련해서는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양륙실적을 위관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제14조(어획확인서의 발급 등)와 28페이지의 제15조(어획확인서의 전달 등)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16조(수출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에 관련해서는 단계적인 순서를 고려해서 어획확인서가 발급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어획증명서 발급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7조(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련해서는 안 제17조제1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어획증명서 발급 행정기관 관련해서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제정안은 예외 없이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양국 간 협정 등 일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8조(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과 관련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자료 요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 요청 수인의무를 규정한 윤준병 의원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19조는 불법어업 등 명예감시원에 관한 조항인데 공청회 진술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과거 수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부터 36페이지의 제23조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별칙과 관련해서 제1호는 앞서 1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부분인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별칙과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전 소위에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은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제25조(양벌규정)와 제26조(과태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부칙 제1·2조와 관련해서 소규모 어선의 경우 조업과 동시에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을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t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어획실적 및 전재실

적 보고에 대한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그렇게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도 돼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난번 소위에서 주신 말씀 또 공청회에서 나온 말씀들 그 사이에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 조정을 하고 그렇게 논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 모두 수용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동의하시고?

○조승환 위원 예.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장관 시절에 이것 다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조승환 위원 예, 이게 사실 연근해어업체계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법이 거의 150년 동안 안 바뀌어 오면서 계속 규제만 얹히고, 얹히고, 얹히고 이런 형태로 진행돼 왔었거든요.

(윤준병 위원, 조경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은 어획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향후에는 풀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게……

○윤준병 위원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조승환 위원 예. 아니, 지금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모르겠어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조경태 다 듣고 있었는데요. 어제 국장이 와서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도 이 논의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에 말씀드렸던 게 ‘해상에서 어업 활동하는 어민들한테 알렸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또 안 알렸다는 거예요.

○조승환 위원 알렸다고 그러던데, 제가 확인하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저희 지역의 다대어촌계장하고 통화하고 장림어촌계장하고도 통화하고 주변의 어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모른다 하더라고, 이 법안을. 그래서 어제 국장한테 말씀했지만 ‘누구한테 알렸느냐’ 하니까 ‘수협에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수협은 전체적으로 경영하는 곳이지 어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아마 부산수협이 25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촌계와 다 소통하고 그런 것 하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실무 직원들이 수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금년 1/4분기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수산정책을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계기에 이 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일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어업체계를 조금 더 선진화하고 고도화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그런 상황이라

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꼭 좀 오늘 소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윤준병 위원님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차관님, 입법이 시급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홍보를 좀 하고 충분히 법안 취지를 알리라고 그랬으면 최소한도 그 내용들을 제대로 챙기고, 차관이 직접 챙기든지 해서 이행을 시켜 봐야지 그런 걸 안 한 것 가지고 이후에 잘하겠다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협에 어촌계가 25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차관이 한번 직접 가서 어촌계장들 간담회를 해서 위원장님의 취지나 입법의 취지·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님 계신 그 지역구의 어촌계장님들을 저희들이 4월 17일에 뵙는 걸로 지금 일정은……

○윤준병 위원 아, 그래요?

○소위원장 조경태 아니, 차관님, 보세요.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사이에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대미투자에 대해서 설명하러.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국내에 계시면서?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법안이 어민들 입장에서는 악법일 수도 있는 독소 조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벌금 같은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의 예를 들었는데 그 나라들의 어가 수입하고 우리나라 어가 수입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왜 어민들의 숫자가 줄어 들고 있습니까? 소득이 발생 안 하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진 국가의 어민들은 왜 잘 살고 우리나라 어민들은 왜 못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야기하지만 어민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면서 어민들보고 계속 그렇게 옥죄는 듯한 정책을 편다면 그것 받아들이 수 있는 어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 되겠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도 후딱후딱—속기사분 후딱후딱이라는 말은 빨리빨리라는 뜻입니다—빨리빨리 만들려고 여러분들은 성과주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하시는 종사자들, 어찌 보면 약자잖아요.

차관님, 미국 어민들의 연간 소득이 얼마쯤 되지요, 한화로 하면?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일본은 얼마쯤 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일본도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우리나라는 얼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이 어가 소득 전체 평균은 약 63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양식어업하고 어선어업으로 나누면 어선어업은 한 44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 4000만 원하고 8000만 원, 두 배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어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연 이 법이 갈 수 있느냐, 간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간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국가가. 국회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거지 정부의 행정 편의 편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법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졸속으로 마련한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1년 동안 전국 권역을 다니면서 어민들 말씀드리고 소통하고 의견 받아서 안이 만들어져서 24년에 국회에 제출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7일 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차관님, 이 법안이 됩니까? 그야말로 연근해어업이잖아요, 양식업도 아니고. 연근해어업 하시는 어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셔야지요. 저희 지역 다대어촌계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민 숫자로 보면. 알고 계시지요? 국가어항으로 제일 크잖아요. 모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숫자가 전국 최고인지, 어촌계별 숫자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국가어항으로 제일 큰 데가 다대어항이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른다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했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설명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해도 안 늦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 방금 차관님 말씀은 2023년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23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어민들한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었어야지요. 제가 어민들 만나 보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민들을 만나는데 연근해어업 발전법 안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예,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일단 차관님이 잘못하셨네. 내가 다대어촌계에는 따로 내려가서 설명을 충분히 다 하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위원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챙겼다.

그런데 저도 도시지만 위원장님하고 비슷하게 어촌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촌계장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좀 빠릿빠릿하고 수협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 저도 만나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2023년 공청회에도 갔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법이 일단 어민들한테 규제를 풀어 주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좀 내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에는 미루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제가 지금 정개특위에 법안이 있어 가지고 내려가야 돼서……

○**윤준병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겸……

○**소위원장 조경태** 예, 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는 차관이나 해수부가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런 내용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 자체는 앞으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는 좀 시급하기도 하고 또 지금 지방선거라고 하는 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소위를 자주 열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좀 양해해 주셔서 오늘 통과되도록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어쨌든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4월 17일에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어촌계장님들과 말씀 나누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본 회의를 4월 17일 이후로 하는 건 안 돼요?

○**윤준병 위원** 상임위나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요. 통과시켜 주시고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사이에 내려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때까지 설명이 안 되면 상임위 때 잡아 버리시지요.

○**소위원장 조경태** 여기 보면 벌칙 조항이나 벌금 이런 게 좀 강화되는 거지요,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대부분 벌칙은 지금 현재 다른 법에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물론 새로운 보고의무 등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신설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과거 다른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제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돌될 경우에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 법은 통과를 시키겠지만 사실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 특히 어민들이 농민보다 소득수준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분들을 범죄인 취급하듯이 하지 말고 또 아주 얹잡아 봐도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어루만져 드리고 또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차관님께서 해 주시고.

17일 날 내려가기로 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17일 날 어촌계장님 뵙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하여튼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1)
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2)
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3)

(11시06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다시 원래 소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20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항만공사 사업내용 조정·확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전대 받은 국·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 명확화, 항만공사 위탁 사업범위 명확화를 내용으로 하고, 곽규택 의원안 및 전재수 의원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조성 건축물 등 분양·임대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안의 항만공사 사업내용 조정·확대와 관련해서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물류서비스업 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상지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으로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개정안에 있는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의2를 타법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과 내용상 겹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조성 건축물 등 분양·임대 권한 명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공사의 사업범위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가 포함된다는 점을, 전재수 의원안은 항만재개발사업에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안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항만재개발법은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사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1번은 건축물 등 분양·임대 근거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사 중에 있고, 3번을 보시면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이나 임대 대상에서 토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법령 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행법을 유지해도 그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관계기관 의견으로 인천광역시는 항만공사의 자산 처분 권한이 확대될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완성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국가 기부 또는 원상회복 반환을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공사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설물이 준공된 경우 해당 국·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항만공사가 공공목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러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따를 경우에 공사의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공간 활용도와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확대되고 법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행법 제27조제2항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은 현행법상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안 제27조제3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42조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 조항은 사업의 예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안 부칙에 관련해서 시행일에 대해 조경태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광규택·전재수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정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현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설비들까지 개정안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입장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수정의견에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총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1번, 4번, 5번은 조경태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2번, 3번, 6번 항목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분 모자라지요?

○윤준병 위원 다음에 하시고……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것을 조금 미루고 다음 안건 하겠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겠습니다.

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1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1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11시13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 이상 3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만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35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3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나 도내 운항 항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거나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직접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되었으므로 준공영제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적자를 보전하여 섬 주민들의 보편적인 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문별 검토는 개정안 내용과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면허기준에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오른 쪽 아래의 수정의견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공영항로 지정·운영제도 도입 또는 보조항로 위탁 운영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개정안에 서삼석 의원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 지정·운영제도로 대체하는 내용을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공영항로 지정·운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그리고 장동혁 의원안은 기존 제도를 유지 그리고 보조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영항로 도입과 관련해서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여객선 보유량 및 자본금에 관한 특례규정과 관련해서 해운법 제5조의 면허기준에 관련해서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여객선 보유량 및 자본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선정 취소 대상을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으로 확대하며, 공영항로로 지정돼 있던 항로가 수익성이 있게 되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해당 항로에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으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공영항로 외에도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로에 대해 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여객선의 운항명령체계 정비와 관련해서 서삼석 의원안은 대상을 공영항로운영기관으로 확대하고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운항명령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그리고 장동혁 의원안은 대상을 보조항로운영기관으로 확대하고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은 대상을 공영항로운영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운항명령 대상과 관련해서 공영항로사업자 및 공영항로운영기관 모두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포함되므로 해당 조항은 현행법을 유지하고, 운항명령 사유 관련해서 장동혁 의원안과 서삼석 의원안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여객선 미운항 사유를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안 제50조와 제53조는 조사,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고 및 조사에 관련해서 운항명령은 보조항로 외의 항로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련해서 지방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영항로 운영을 위탁받는 것이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안 부칙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도 소요될 기간과 현 국가보조항로를 운영 중인 민간위탁 선사와의 계약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5조 1항—이것은 면허 기준에 관련해서 도서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그리고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후단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도 전문위원이 보고드렸고 오늘 제시해 주신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소위에서 주철현 위원님께서 한두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잠깐만 보고를 드리면 ‘지자체로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안여객선 항로라는 게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운항되는 항로가 아니고 지자체 간을 운항하는 항로도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전국적인 면허체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현행 체제가 지자체 입장에서든 괜찮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제로 하려고 하는, 오늘 논의가 되는 이 항로는 전국에 있는 99개 항로 중에서 국가보조항로로 유지되고 있는 29개 항로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29개 국가보조항로는 지금도 국가가 돈을 들여서 선박·선원을 사실상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하고 그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나머지 70개 일반 항로에 대해서는 적자가 누적되는 항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섬 주민이 너무 적어서 일반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항로에 대한 소외 도서 지원사업 등도 별도로 정책과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논의해 주시는 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제로 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는 이 정책은 선박의 현대화 그리고 선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선원들의 자격도 유지를 하면서 또 선원들의 근로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이 저희들 설명 올리는 과정에서 ‘29개 항로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나눠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남아 있는 기간에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단계적으

로 시행하는 방법도 포함하여 논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지금 공영항로체계로 바꾸는 내용이 정부의 역할이나 책임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아나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추정하면서도 여기 관련되는 면세유나 이런 지원이 없으면 운항이 중단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부터 잘 챙기시고,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자칫하면 직접 운영하지 않은 민간의 운영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체계로만 가다 보면 기존에 노후화되거나 잘못된 경영 여건 이런 것들이 반복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는 과정도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운항노선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주철현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 29개 항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 부칙이나 특례를 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들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고, 29개를 순차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뭔지를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29개 국가보조항로를 공영제로 해서 공공기관으로 위탁…… 지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한 11개 항로 정도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민간기업에서 ‘도저히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빨리 이것을 위탁을 해 달라’, 이렇게 속도를 빨리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어떤 데는, 신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군에서 자체 재단을 만들어서 한 4개 항로를 군 단위에서 공영제 형식으로 운영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만에 바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이 법에 부칙이나 시행 시기를 담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2027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거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데는 현행 규정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별도의 규정 개정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차관님, 우리가 내항선·외항선이라고 부를 때 내항선은 보통 국내 여객선을 말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여객선과 국내 항을 운항하는 화물선도 포함은 합니다만……

○**소위원장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되게 영세한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흑산도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었는데요. 한 몇 개월 됐는데 그것 보니까 여객선이 되게 낡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선박 안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정부가 잘 살피서 가지고……

또 내항선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은. 외항선 쪽하고 비교하면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근무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많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연세도 조금 많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런저런 것을 좀…… 요즘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되고 또 여객의 어떤 안전 이것도 되게 강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하고.

또 모든 걸 국민 세금으로만 지출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섬에 갈 수 있는, 섬마을 관광산업도 좀 육성을 해서…… 그것을 문화관광부하고 연계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도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잘 만들어서 윤준병 의원님의 발의 취지가 좀 더 섬마을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계획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섬과 어촌의 해양관광 확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연안여객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소위원장 조경태** 이것 용역을 좀 하셔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해서 어떻게 하면 섬마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소득 증대도 되고 또 안전한 여객선을 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부가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서천호 송옥주 윤준병 조경태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정책기획관 이상호

어업자원정책관 김인경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 오행록

합심회의의록